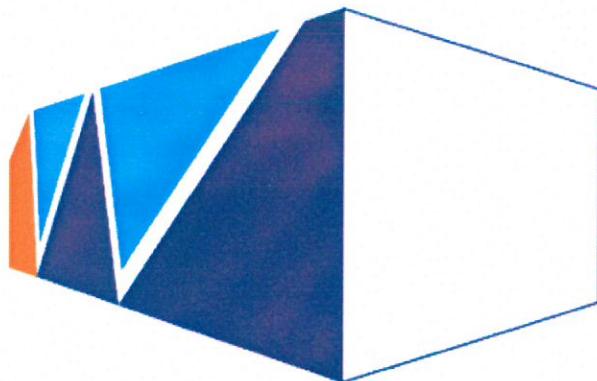


2020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

가이드 북

2020
VALUE
CONNECT



인천광역시

ITP 인천테크노파크

목차

1. 사업개요
2. 프로세스
3. 지원대상
4. 지원 규모 및 내용
5. 제출서류 목록
6. 제출서류 상세내용
7. 제외기업
8. 유의사항

2020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인센티브 지원

○ 사업개요

구분	내 용
지원대상	2018 ~ 2019 지원기업 중 고용유지율이 우수한 기업
지원사업	6개사 내외(* 사업장 규모 구간별 선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인이상 ~ 10인이하 : 1개사 • 30인이하 : 2개사 • 100인이하 : 2개사 • 100인초과 : 1개사
지원내용	기업 근로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비용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
모집기간	2020. 3. 4(수) ~ 2020. 3. 18(수)

○ 프로세스

모집	1. 사업공고 (ITP)	- 사업공고
	2. 참여신청서 (신청기업)	- 사업신청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bizok.incheon.go.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
서류심사	3. 평가 및 지원결정 (ITP → 신청기업)	- 전직원 고용유지율(70%), 청년 고용유지율(30%)을 합산하여 기업 규모 구간별 총 6개사 선발
선정통보	4. 선정공고 (ITP)	-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,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제출
지원 적절성 평가	3. 평가 및 지원결정 (ITP → 신청기업)	- 현장평가(50%), 위원평가(50%)
	5. 비용완납 (선정기업)	- 총 소요금액 <기업이 우선 완납> 계좌입금 규정준수 (현금 지출 불가)
지원금 지급	6. 지급신청서 제출 (선정기업)	- 지원금 신청서(지출증빙 포함) 등 관련서류 제출 - 현장확인 (ITP)
	7. 지원금 지급 (ITP → 신청기업)	- 검토 후 지원금 지급(기업체 계좌로 지급)

○ 지원대상 : 2018 ~ 2019 지원기업 96개사

구분	내 용
인정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용유지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전체 직원 비율 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산정하여 70% 반영 - 청년 고용유지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전체 직원 비율 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산정하여 30% 반영 • 만 15세 ~ 39세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(1980. 1. 1.~ 2004. 12. 31 범위에 출생한 자로 한정) <p>※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3년 중복 지원 규정과 무관</p>

○ 지원 규모 및 내용 :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구간별 지원기업 선정

구분	내 용						
지원 규모	사업장 규모	지원기업 수	지원금액				
	5인이상 ~ 10인이하	1개사					
	30인이하	2개사					
	100인이하	2개사	10백만원 이내				
	100인초과	1개사					
지원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액지원(※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기준이며, 지원금 외 추가비용은 기업체 부담) 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 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시설개보수 지원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화장실, 휴게실, 샤워실, 탈의실, 집진·공조시설 </td></tr> <tr> <td>물품구입 지원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, 안마기기, 옷장(락커), 냉장고, 비데, 세탁기, 건조기, 신방장, 온수기, 핸드드라이기 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물품은 작업현장 외 화장실, 휴게실, 샤워실, 탈의실만 지원 가능</p>	구분	내 용	시설개보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화장실, 휴게실, 샤워실, 탈의실, 집진·공조시설 	물품구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, 안마기기, 옷장(락커), 냉장고, 비데, 세탁기, 건조기, 신방장, 온수기, 핸드드라이기
구분	내 용						
시설개보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화장실, 휴게실, 샤워실, 탈의실, 집진·공조시설 						
물품구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, 안마기기, 옷장(락커), 냉장고, 비데, 세탁기, 건조기, 신방장, 온수기, 핸드드라이기 					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기준이며, 지원금 외 추가 비용은 기업부담 ▶ 인센티브성 사업임을 감안하여 <u>물품구입 비용 50% 제한 없이 10백만원 전액지원</u> ▶ 시설 개보수 지원 시 신축은 불가하며 인테리어 및 증·개축은 지원 가능함. ▶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기존 시설 매입비, 임차료, 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▶ 제조 작업현장 및 직원 휴게실만 신청 가능하며, 사무공간은 신청불가 ▶ 안마기기는 1개당 최대 1,500천원까지 지원(초과금액은 기업부담) ▶ 세탁기, 건조기는 1개당 최대 1,000천원까지 지원(초과금액은 기업부담) ▶ 냉장고는 일반형 350L 이하 제품일 경우 지원 가능 						

○ 제출서류 목록

No	제출서류
1	「2020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」 참여 신청 및 계획서 「서식1」
2	「2020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」 기업 협약사항 「서식2」
3	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, 청렴이행 협약 등 동의서(기업체) 「서식3」 고용유지율 증빙서류(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) (신청일기준, 2019년 신청일 기준 각 1부)
4	예시 : 신청일이 2020년 05월 08일인 경우 ① 2020년 5월 8일 기준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② 2019년 5월 8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
5	국세 · 지방세 완납증명서 ·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
6	그 외 신청 내용 별 접수기간 요청서류

○ 제출서류 상세내용

제출서류 상세내용	
1. 참여 신청서	① 기업정보 및 지원자격 관련사항 확인. ②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, 관련서류를 재요청 할 수 있음.
2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①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블라인드처리) - 신청일 기준, 2019년 신청일 기준 각 1부 예시 : 신청일이 2020년 05월 08일인 경우 ① 2020년 5월 8일 기준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② 2019년 5월 8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
3. 기업 협약사항	① 각 문항에 맞는 확인 필수 ② 위 사항에 동의 · 협조 · 협약 · 확인하지 않을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4.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, 청렴이행 협약 등 동의서 (기업체)	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,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,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, 청렴 이행 및 사업참여 협약, 제외기업 해당여부 ② 위 사항에 동의 · 협조 · 협약 · 확인하지 않을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5. 국세 · 지방세 완납 증명서 · 4대사회보험 완납 증명서	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(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 가능
6. 그 외 신청 내용 별 접수기간 요청서류	

○ 제외기업
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, 불법행위,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 기업
- 동종업체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등 심의위원 다수가 선정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업
- 임금체불, 근로계약서 작성, 부당 노동행위, 4대보험 등 기본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
-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-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 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
- 기타, 운영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
○ 유의사항

-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, 동 사업 및 관리기관 지원지원 서비스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.
- 허위로 신청한 경우, 사업비 전액을 환수함.
-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친인척 관계(직계 존비속, 형제, 자매 등)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채용실적에서 제외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 - 원칙적으로,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적격 및 지원금 지출여부 판단
 -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,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
- 지원 선정 취소
 - 신청업체가 부도, 폐업,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 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 - ※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,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등에 통보
 - 지원결정 통보(일) 이전에 시행한 경우
 -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, 과제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 -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기타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

- 변경시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※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
- 변경시 비용이 상향되어도 결정된 지원금 이상으로 상향되지 않음.
- 지원포기의 경우 지원사업포기신청서 제출

○ 시공·제작업체 선정

-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(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)에 해당하는 시공 및 물품구입 업체는 선정 불가
- 전자 세금계산서 미대상은 수기 세금계산서와 기타 시공업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

○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

-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시 현장점검 후 지원금 지급 할 수 있음

○ 지원금 지급

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,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 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 (입금증 및 입금통장 사본) 제출을 원칙으로 함
- 지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시 향후 재지원 불가